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73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용갑·박 정

서미화 · 문금주 · 전진숙

송옥주 • 민병덕 • 윤종군

한민수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,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, 전망, 소상공인 보호,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에 관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특허·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	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		
수립·시행) ①·② (생 략)	수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		
	음)		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③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4의2.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		
	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		
	<u>ঠ</u>	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